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85호)

2025. 11.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 및 회부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5
1. 주요 내용	5
2. 검토 의견	5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31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30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오늘날 국제사회는 유례없는 안보 불확실성과 군사적 충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긴장 고조, 북러 간의 군사 동맹,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는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한 갈등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로 인한 동시다발적이고 국경을 넘어서는 재난은 인류 공동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은 단순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이자, 기후, 식량, 인구 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와 안보의 균형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합니다.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정부의 평화외교를 뒷받침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엄숙히 결의합니다.

1. 우리 국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그 기틀을 마련한다.
2. 우리 국회는 전쟁의 예방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을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한다.
3. 우리 국회는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한다.
4. 우리 국회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 공동의 이익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5. 우리 국회는 기후, 식량, 인구 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6. 국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회 외교 헌장’을 조속히 제정, 발표한다.

제안이유

2025년 현재 국제 정세는 다극화와 신냉전이 동시에 전개되며, 전례 없는 안보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미-중 간 전략 경쟁의 격화 등으로 힘의 논리가 규범을 앞서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안정은 물론 세계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평화의 절박함을 그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다.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생존 전략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민족, 한겨레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받들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며, 국제사회와 굳게 연대하여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굳건히 뒷받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변함없는 책무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위협하는 전쟁을 바라는 정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여, 야를 떠나 특정 정권의 이해득실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초당적·초정파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정권과 관계없이 이 결의안의 정신은 면면히 계승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 초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이처럼 모든 국회의원이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반을 굳건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

Ⅲ.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김영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항구적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은 ① 우리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 기여를 지향하고, ②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 ③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 및 공동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고, ④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연대 강화 및 실질적 해법을 모색함을 밝히고 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회 외교 헌장’의 제정·발표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2. 검토 의견

가. 제안 배경

최근 국제 정세는 안보, 경제·통상 환경, 국제질서가 모두 전례 없이 요동치는 상황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가 필요한 상황임.

안보 측면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에서의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일상화되

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중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WTO에 기반한 국제사회 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있음.

국제질서의 경우 유럽의 국내적 분열과 양극화 속에 ‘열린 사회’에 대한 서방의 확신이 흔들리며 국제질서에서 규범과 가치의 위상이 퇴조하고 있으며,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국제질서가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

한반도 정세는 오랫동안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및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 각종 위협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있음.

동 결의안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반 차원의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역내 및 세계적 평화의 시작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초당파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임.

나. 주요 주문별 검토 의견

안 주문 제1호와 제6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동 결의안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를 위한 “국회 외교헌장 제정”에 대해 밝히고 있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우리 국회는 <u>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u> 그 기틀을 마련한다.6. 국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u>‘국회 외교 헌장’을 조속히 제정, 발표</u>한다. |
|--|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남북한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내 평화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며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한편,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한 법적 지위 및 효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의 관계 법규로는 국회규칙, 국회규정, 국회내규, 지침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윤리강령’(강령)과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이 있음.¹⁾

‘국회 외교 헌장’의 경우 국회규정이나 내규, 지침은 행정절차적 내용을 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국회규칙 형식으로서의 제정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헌장의 내용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과 같이 별도의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참고자료 1] 국회관계법규 체계

참고로, 행정부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세와 가치를 규정한 「공무원 헌장」은 대통령훈령으로, 국세청의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청고시로 운영 중임.

안 주문 제2호부터 제6호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 밝히고 있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2. 우리 국회는 전쟁의 예방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을 지향하며, <u>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u>한다.3. 우리 국회는 <u>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u>,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한다.4. 우리 국회는 국제관계에서 <u>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 공동의 이익</u>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5. 우리 국회는 기후, 식량, 인구 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u>국제 연대를 강화</u>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
|---|

동 주문은 평화와 협력, 공동의 이익, 연대 등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바, 이는 향후 ‘국회외교헌장’ 제정 시에도 기본 골격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제3호 중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외교 관계에서 모든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향하며” 등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표현으로의 수정도 고려할 수 있음.

다. 종합 의견

동 결의안은 역내 및 세계 평화의 시작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강조하며 이를 우리 국회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히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정이 필요한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해 추후 그 형식 및 효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여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국회관계법규 체계

구분	근거법규	주요내용
국회 규칙	☐ 본회의 의결 규칙 -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위임	☐ 본회의 의결 규칙 - 국회의사절차, 의사운영 및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
	☐ 운영위 동의 규칙 -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위임 - 제정권자는 국회의장	☐ 운영위 동의 규칙 - 국회소속기관 조직·인사·운영, 국회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국회 규정	☐ 「국회사무관리규정」 제6조제1호 ☐ 법률·규칙에서 위임 ☐ 제정권자는 국회의장	☐ 국회규칙의 위임이 있거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회의장의 독자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국회소속기관의 공통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 등
국회 내규	☐ 「국회사무관리규정」 제6조제1호 ☐ 법률·규칙 또는 규정에서 위임 ☐ 제정권자는 국회소속기관의 장	☐ 법령의 위임에 의해 소속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적용대상자가 일반적일 것 ☐ 내용이 장기에 거쳐 연속성이 있는 사항일 것 ☐ 규정의 대상내용이 일반적이고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중요성을 가질 것
그 밖의 하위 규범	☐ 「국회사무관리규정」 제6조제2호 ☐ 「국회사무처법규등의사무처리지침」 제2조제2호 ☐ 제정권자는 의장, 국회소속기관의 장	☐ 지침·수칙 - 의장 또는 소속기관이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 ☐ 지시 -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일일명령(당직·휴가 등 일일업무명령)

문 의 처
02) 6788-5270